정 정 신 고 (보고)

2026년 11월 1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20. 8. 18

3. 정정 사유 :

- 환매주기 단축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VaR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-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

4. 정정요구· 명령 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-	**업데이트**
환매방법	-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**9영업일(D+8)**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-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**10영업일(D+9)**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	-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**6영업일(D+5)**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-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**7영업일(D+6)**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**(추 가)**	**- 2026.11.20. : 환매주기 단축**
5. 운용전문인력	-	**업데이트**
10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주2)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% VaR는 **22.37%** 입니다.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주2)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% VaR는 **24.78%** 입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	나. 환매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제9영업일(D+8)**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2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제10영업일(D+9)**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.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**제7영업일** 전일 (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**제8영업일**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	나. 환매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제6영업일(D+5)**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2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제7영업일(D+6)**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.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**제4영업일** 전일 (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**제5영업일**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
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**업데이트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재무정보 2.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**업데이트**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**업데이트**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7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**(추 가)**	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7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**(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·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)**